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심사보고서

2025. 9.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7월 28일, 김 현의원 등 14인

나. 회부일자: 2025년 7월 29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8.26) 상정, 제안설명, 검토
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1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2025.8.27) 상정, 제안설명, 심사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2025.9.9) 상정, 제안설명,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1차 안건조정위원회(2025.9.11)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9.11)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김 현의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통신의 융합과 진흥에 관한 사무 중 유료방송 정책이나 방송산업 진흥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 전반의 규제 및 이용자 보호 등 사무를 관장하고 있으나, 최근 방송통신 환경은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의 급속한 성장, 인공지능 기반 콘텐츠의 등장, 미디어 소비방식의 다변화, 플랫폼 중심 유통구조의 고도화 등으로 디지털 융합이 급격히 진전되고 있음.

이러한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규제와 진흥, 전통 미디어와 뉴미디어 전반에 걸친 정책의 일관성과 신속성이 요구되나, 현행 이원화된 체계는 미디어 융합 현실에 부합하지 못하고 정책 실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저해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님.

또한, 기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표현의 자유, 알 권리 등 국민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콘텐츠 심의·제재 권한을 행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가 없고 헌법 또는 법률 위반 시 국회의 탄핵소추 규정이 부재하여 민주적 통제 장치가 미흡하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에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방송, 통신, OTT, 디지털 콘텐츠 등 시청각미디어 전반을 포괄하는 정책을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고자 함.

아울러 기존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시청각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개편하여 OTT 콘텐츠 등 뉴미디어 정보에 대한 심의 기능을 명확히 하고, 심의위원장을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시키며, 헌법 또는 법률 위반 시 국회의 탄핵소추가 가능하도록 하여 심의 기능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 이를 통해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부합하는 정책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방송과 시청각미디어의 공공성·독립성을 제고하며, 규제와 진흥이 균형을 이루는 통합적이고 일관된 정책 집행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방통위 조직개편과 관련해서는 규제와 진흥의 분리 또는 통합(합의제와 독임제 형태 간 선택 등), 위원회 위원 수 등 여러 사안¹⁾이 함께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최근 관련 논의를 살펴보면, 2025년 6월 더불어민주당 방송콘텐츠특별위원회에서 미디어 기구개편 관련, △미디어콘텐츠부+공영방송위원회(미디어콘텐츠부 산하 행정위원회), △미디어콘텐츠부+공공미디어위원회(독립형 위원회), △확대형 방송통신위원회 등 3가지 방안을 제시한 바 있음. 2025년 5월과 7월에는 미디어 3학회(한국언론학회·한국방송학회·한국언론정보학회)가 미디어 거버넌스 개편과 관련해 ‘미디어·ICT 통합 독임제부처(정보미디어부)’와 ‘공영미디어위원회’로 산업영역과 공적영역을 이원화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음.

1) 나아가 거버넌스 체계의 개편은 향후 전통매체와 신규매체 간의 규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동일서비스-동일규제’의 원칙을 적용하는 ‘수평적 규제체계’ 마련 필요성 등의 논의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임.

거버넌스 개편 논의는 기능분리형 모델(독임제 부처+합의제 기구)과 통합형 합의제 모델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는 진흥과 규제를 분리할 것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인 것으로 보임. 현재 논의되는 안은 방송과 통신 또는 미디어 등 관련 업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에는 공통적인 공감대가 있다고 보임. 다만,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위해 규제와 진흥 기능을 하나의 기구가 맡아야 한다는 ‘통합론’과 정책집행의 신속성과 규제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두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는 ‘분리론’이 대립되는 것으로 보이며, 이와 함께 독임제적 또는 합의제적 요소의 비중을 어떻게 둘 것인지의 논쟁이 지속되는 것으로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김 현)

최민희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김현의원이 대표발의한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6. 안전조정위원회 심사내용

(안전조정위원장 김 현)

최민희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김현의원이 대표발의한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지난 9월 9일 정보통신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의·의결한 「방송 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대안을 위원회 조정안으로 의결함.

7. 찬반토론의 요지

방통위를 대체하는 법안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할 필요가 있으나, 안전조정위원회 등이 강행 처리됐다는 점에서 반대함(박정훈 위원). 안전조정위의 숙의 기간을 지키지 않는 건 국회선진화법 취지와 맞지 않고, 처분적 입법으로 위헌이라는 지적도 있으며, 국회 특위 구성 등 여야 협치를 통해 신중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음(최형두 위원).

독임제 부처를 신설하는 안을 발의했으나 시간관계상 이번에 병합심사가 안 되었고, 독임제 부처 신설 등의 논의는 시간이 필요해 일단은 이번처럼 가야한다고 생각함(이훈기 위원). 비교섭단체 몫으로 안전조정위원회에 들어온 것은 정당한 몫이고 현재 언론개혁이 필요한 시기로 법안에 대해 찬성함(이해민 위원).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정부조직개편을 하는 것으로 과도하게 정치적 프레임을 씌우지 않아야 함(한민수

위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수차례 얘기했으며, 충분한 숙의를 통해 진행된 사안임(김 현 위원).

8.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

9. 기타 사항

방송 미디어 통신 거버넌스 개편 공청회(2025. 9. 5.) 개최